

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

1.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1조에 따른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('25.12.1.~'26.3.31./평일 06:00~21:00)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되었으며, 이에 운행 중인 귀하 소유 차량을 적발하였기에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합니다.
2. **2026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(폐차, 저감장치 부착) 완료한 차량에** 한해서는 **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**, 다만 미조치한 차량에 대해 **'26년 10월경 과태료 처분 감경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**이며, 의견제출 기한 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- **환경부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'26년까지만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**
- **2026년 부산시 저공해 조치 사업 신청 : 저감장치 부착(공고 3월 예정, 신청 4월 예정), 조기폐차 지원(공고 2월 예정)**
☞ 부산시 외 차량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 사업 문의
- **7차 계절관리제 기간 단속제외 대상인 소상공인 차량은 소상공인확인서 등** 관련 서류 제출 ☞ 문의 888-3588, 888-3589

예정된 처분의 제목	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					
당 사 자	성명(명칭)					
	주 소					
	단속차량					
	단속일시					
	단속지점		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				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과태료 10만원(감경고지 기한 내 자진납부 시 8만원)	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1조					
의견제출	기관명	부산광역시	부서명	탄소중립정책과	담당자	김은지, 박상호
	주소	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, 22층			전화번호	051-888-3588 051-888-3589
	전자우편	kej1223@korea.kr			팩스번호	051-888-3569
	제출기한	2026년 9월 30일까지				

부 산 광 역 시 장

